

광주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가단53703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균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1. 9.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8. 체결된 매매계약을 3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이다, 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6. 10.경 F 및 G과, 공사대금을 781,000,000원, 공사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2. 10.까지로 하여 광주 서구 H 소재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I 유한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는 수급인인 D의 위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후 2016. 10. 21.경 위 공사계약의 도급인이 F 및 G에서 'J문중'으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0. 21.경 D과, 피보험자를 F(보증보험 청약서에는 상호가 위 'J문중'으로 되어 있다), 보험금액을 78,100,000원, 보험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7. 2. 10.까지로 하여 앞서 본 공사계약에 관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 제5조 제1호에 의하면, 원고는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D과 그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한편 앞서 본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D의 대주주이자 I의 대표이사인 C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위 연대보증 당시 D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K'였으나, 원고가 제출받은 D의 2016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위 C이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 후 D이 앞서 본 공사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7. 2. 10. 앞서 본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21. F에게 보험금 78,1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의 D 및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원리금은 2020. 7. 20. 현재 99,382,816원이다.

마. 그런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12. 8. 피고와, 당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분할 전 전남 해남군 L 답 3,040.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2.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7. 6. 7. M와,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위 부동산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는데,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시세는 32,000,000원을 상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7호증(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서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구상업무지침에 따르면, 원고는 앞서 본 보험사고가 발생한 2017. 2. 10.경에는 연대보증인인 C에 대한 ‘재산세 과세증명서’상의 물건소재지 등 모든 재산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당시 원고는 위 구상업무지침에 따른 재산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앞서 본 연대보증 당시인 2016. 10. 21.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C에 대하여 신청한 이 법원 2018카명150 재산명시 사건 및 2018카조3400 재산조회 사건을 통해 2018. 11. 2.경에는 C에게 재산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원고는 그 무렵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 2018. 11. 2.경으로부터 제척기간인 1년이 지난 2020. 9. 16.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C의 이 사건 부동산 처분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 구상업무지침에 위반하여 즉시 재산조회를 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권리남용 내지 소권남용에 해당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고 주장의 이 법원 2018카명150 재산명시 사건 및 2018카조3400 재산조회 사건에서 현출된 자료상으로는 C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 및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9. 16.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인 2019. 12. 6.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를 열람한 후 비로소 C의 부동산 소유 및 위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된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고, 이와 달리 원고가 위 소 제기일부터 역산하여 1년 이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② 또한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권리남용 내지 소권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바, 앞서 본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그 기초가 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던 점, 위 이행보증보험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물 신축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인데, 위 매매계약은 공사기간 4개월 중 2개월가량이 지난 시점에 체결된 것인 점, 그 후 D이 공사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공사기간 말일인 2017. 2. 10.자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이 발생한 점, 그 후 원고가 D 및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7차7365호로 위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나, D 및 C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특별히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점, C과 D 및 I의 관계 등 앞서 든 증거자료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사전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취소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로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앞서 본 D와 C의 관계 등에 비추어, C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그 부동산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M에게 처분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2,000,000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및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이 2020. 7. 20. 현재 99,382,816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변론종결 당시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C의 자력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명의로 ① N에 대한 4,300만 원의 대여금채권, ② 3,2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 ③ O에 대한 4,800만 원의 대여금 및 이자 채권, ④ 23,67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⑤ 금융기관에 대한 2,376,392원의 예탁금채권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자신이 형식적으로는 49%의 지분을, 실질적으로는 지분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I 명의로 ① 주식회사 P에 대한 3,900만 원(보유지분 상당액은 19,110,000원)의 공사대금채권, Q에 대한 5,000만 원(보유지분 상당액은 24,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바, 제출된 증거들 및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은 대여금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 주장의 승용차의 경우 2015. 9. 2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20. 7. 3.에야 비로소 말소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6. 10. 17.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압류되기까지 한 점, 피고 주장의 예탁금채권의 경우 그 채권 명의인이 C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자료 및 을 제10 내지 13,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앞서 본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의 수익자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데, R과 I 사이에 2016. 6. 27. 체결된 S병원 증축공사가 완공되어 I은 R에 대하여 4,600만 원의 공사 잔대금채무가 있었던 상황에서, C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며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가져가라고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이를 M에게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 중 위 부동산 등기 관련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바로 R의 공사대금 계좌로 입금한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C와 원고 사이의 구상관계에 관하여는 알 수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주장의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R이나 I도 아닌 피고와 C 사이에 C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결된 것인 점, 피고 주장에 의하여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고 말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와 C은 초중고교 시절까지 학교를 함께 다닌 매우 친한 친구였다가 2016. 2.경 동창회에서 다시 만난 후 2016. 6. 27.경 각자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상 파트너까지 되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이나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우

목록

1. 전남 해남군 L 답 3016.4㎡
2. 전남 해남군 T 답 17.3㎡
3. 전남 해남군 U 답 7㎡ 끝.

